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중 소 기 업 인 력 지 원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범위에 부동산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자금 지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20.12.8 공포, '21.6.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시행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법 개정에 따라 적용 범위에서 ‘부동산업’을 삭제함(안 제2조)
- 나.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인 미취업자의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기준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의2제1항)
- 다. 우수근로자에 대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사항으로 포상 등을 규정함(안 제27조의2)
- 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의 대상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과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기숙사를 지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업”을 “일반유흥 주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29세”를 “34세”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로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우수근로자 연수 등 지원) 법 제29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주거자금 지원 등)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 지원의 대상

- 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 및 인접한 시·도)에서 주

거지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나. 기숙사를 신축 및 매입하는 중소기업

2.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거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기준, 지원대상 주택, 지원한도, 지원절차 등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고시로 정할 수 있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기숙사를 신축 및 매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절차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 단서에서 " <u>부동산업</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 <u>일반유흥 주점업</u> -----
1. <u>부동산업</u>	<삭 제>
2. 일반유흥 주점업	2. -----
3. 무도유흥 주점업	3. -----
4. 기타 주점업	4. -----
5. <u>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u>	5. <u>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u>
6. 무도장 운영업	6. -----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① -----
1. 15세 이상 <u>29세</u> 이하인 미취업자	1. ----- <u>34세</u> -----
	-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우수근로자 연수 등 지원) 법 제29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2(주거자금 지원 등)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 지원의 대상
 - 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 및 인접한 시·도)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 나. 기숙사를 신축 및 매입하는

중소기업

2.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거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
소기업 근로자의 소득기준, 지
원대상 주택, 지원한도,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주거자금 지
원의 기준과 절차를 고시로
정할 수 있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기업이 기숙사를 신축 및 매
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절차에 따라 우대하여 지
원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연 락 처	042-481-4469